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9.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4호로 2014년 9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우리구의 교육발전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교육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재단의 시행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나. 재단 재산의 조성(설립·운영 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다.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라. 재단의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마. 재단의 보고사항 및 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7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면학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재를 발굴,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구 장학재단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 우리구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의 학비 지원 등 장학사업 발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 법체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 장학재단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민법」 및 공익법인법에 의하여 독립된 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것으로서, 장학재단의 의사결정은 온전히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 및 이사회에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출연 목적에 맞게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조문별 세부내용 검토결과

- 안 제5조(사업) 제1항 각호 중 제5호에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공익법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목적1)에 비해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된 바,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안 제8조(임원)에서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로 담당국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출연 목적에 맞게 장학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단에 대한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장학재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당연직이사 포함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참고로 구청장이 이사장인 ‘영등포구 문화재단’은 15명 이내 중 3명<sup>2)</sup>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임직 이사 2명은 별도로 구의회에서 추천)

---

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행정국장, 재정국장, 복지국장

- **안 제9조(사무국)**에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구는 장학재단을 설립·운영중인 서울시 타 자치구와 달리 현재 장학재단 설립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기금조성이 전무한 실정으로,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등 초기비용으로 최소 5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사무국 운영에 따라 매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무국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 **안 제12조(보고)**에 “재단은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이사, 감사 임면 사항,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학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구청장의 실질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장학재단에 대한 집행부의 지휘·통제 기능과는 별개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차원에서 재단 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단의 예산·결산 및 그 부속자료에 대한 구의회 제출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의 각종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장학금을 합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제정 취지는 합당하다고 보여지나, 우리구의 경우 기부를 통한 일정 규모의 재원 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구 재원의 지속적인 출연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장학재단의 설립 필요성과 함께 안정적인 장학재원의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4조(설립허가신청)** ①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



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삭제 <1991.5.31>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9. 삭제 <1991.5.31>

②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 4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2.5.22)

1.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의 자녀인 자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문학, 기초과학, 기초연구분야의 전일제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재학생(진학예정자 포함) 중에서 지도교수 또는 대학총장이 추천한 자(개정 2009.09.29)
  3.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에서 사회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이 추천한 자 (개정 2009.09.29)
  4.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중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된 고등학교의 학생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신설 2009.09.29)
  5. 실직, 파산, 질병등 기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중 학교장 또는 총장이 추천한 자(신설 2012.5.22)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한 지급기준 등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9.29, 2012.5.22)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는 시 교육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장과 시 교육청 관련 실·국장 및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개정 2012.5.22)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시장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2.5.22)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상근임원 1인을 둘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22)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 ③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행정국장
  2. 재정국장
  3. 복지국장
- ⑥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⑦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공모에 의해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⑧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

② 임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이사장은 상임으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단, 정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4.29, 2011.12.29>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4.29>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신설 2010.04.29, 개정 2011.12.29>

③ 비상임 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영등포구의 재정국장, 안전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6.06.26, 2009.10.01, 2010.04.29, 2010.09.30, 2011.07.18, 개정 2011.12.29, 2013.07.25>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세무, 및 회계전문가<개정 2011.12.29>

2. 교통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4.29, 2011.12.29>